

인천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630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6304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가소35144 판결

전 문

원고,항소인 A

담당변호사 양선화

피고,피항소인 B

변론 종결 2020. 4. 10

판결 선고 2020. 5. 22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가소3514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까지 연 5%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원고)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 75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2005. 12. 6.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장남 D, 장녀 원 고,차녀 피고,차남 망 E(2013. 1. 23. 사망)이 있었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익산시 F 대 2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있었다.1)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 10.에 2005. 12.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14. 1. 29.에 2014. 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63,000,000원)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4. 1. 28. G으로부터 63,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4.1. 29. H의 농협 계좌로 그 중 5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3호증, 을 제 1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와 E의 아내 I는 D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이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1/4씩 나눌테니 인감도장을 달라.'고 말하였다. D와 원고는이를 믿고 피고에게 자신들의 인감도장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과 달리 자기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후 G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63,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원고의상속지분인 1/4상당의 15,750,000원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금액의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5,7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망인은 생전에 자신을 부양한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주겠다고 여러 차례말하였다. D와 원고가 피고에게 인감도장을 준 것은 이러한 망인의 뜻을 따른 것이다. 다만 면이자신의 채무 문제때문에 한동안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해 달라고 하여 부탁을 들어 주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는 매매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전액을 I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이득을 얻지도 않았다.

3.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원인 없이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을 제 3, 5내지 9호증의 각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사정들을 알 수있는 바, 이를 고려하면 D와 원고가 자신들의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것은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상속시키려는 망인의 뜻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원고가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이루어져 무효라거나,이 사건소유권이 전등기의 등 기원인 인상속 재산 협의 분할이통정허위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설령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① 원고는 앞서 본 것처럼 피고측에서 매매 및 대금 분배제안을 하였고, 망인이 2005. 12. 6. 사망한 이후로 D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계속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② 반면 I는 피고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을 제 6, 9호증),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것이 실은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 ③ 피고는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63,000,000원을 받은 다음날 I의 친언니 H(개명 전 성명 J)의 계좌로 59,000,000원(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500,700원, 주민세 350,070원이 부과되었는바, 이러한 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위 송금액을 일부라도 돌려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원고가 피고에게 인감도장을 맡긴 것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넘게 경과한 2018. 5. 14. 이 되어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우 판사 오흥록 판사 윤성현

- 1) 그 지상에 미등기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의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한다.